

발전기금관리규정

제정일 : 2004. 9. 23.

개정일 : 2025. 5.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출연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 관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의 기금은 자산의 형태 또는 종류에 따라 현금 등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도서, 유물, 골동품고서화 등의 문화재, 실험기자재 등 교육용 물품을 포함해 자산 가치가 있는 유형의 자산을 일컫는다.

제3조(기금의 종류) 기금은 사용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발전기금: 기부자가 기금의 사용용도 및 집행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출연한 기금
2. 지정발전기금: 기부자가 장학금,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등 사용용도를 지정하거나 특정 대학(원), 학부(과, 전공) 등 그 집행기관을 지정하여 출연한 기금
3. 수증물품: 기부자가 도서자료, 골동품, 고서화 등의 문화재, 실험기자재, 유가증권, 용역 등 교육용 물품을 기증한 물품
4. 부동산: 기부자가 교육용 또는 수익용으로 기증한 부동산

제2장 발전기금조성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2.24.>

1. 기금의 관리 및 조성계획
2. 기금과 수익금의 사용계획
3. 기금운용을 위한 예산편성 및 결산
4.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5. 기금 유치 공헌자의 보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12., 2022.5.9.>

- ②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법인사무국장, 발전기금 기부자, 동문, 학부모, 발전기금 전문가 중에서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③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8.29.>
-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⑥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총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 회의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사용) ①기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은 매년 수입 및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교육용시설, 기자재의 확충, 학생 장학금, 우수교원 초빙, 우수학생 유치, 교육과정 개발, 교원의 연구비, 기타 교육여건 개선 및 본교의 교육연구의 활성화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특정 대학(원) 또는 학부(과, 전공)에 기부한 기금은 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대학(원) 또는 학부(과, 전공)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2.5.9.>
1. 기부자가 특정 용도를 지정한 기금을 지정한 용도에 사용할 경우
 2. 기금의 사용 용도가 장학기금일 경우
 3. 지정발전기금의 이자를 사용할 경우
 4. 비지정기금 사용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 ④지정발전기금이 목적을 상실한 경우 기부자와 협의를 통하여 일반발전기금으로 전환하거나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단,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발전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25.5.1.>
- ⑤다음 각 호의 지정발전기금 잔액은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일반발전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25.5.1.>
1. 집행계획 또는 집행실적이 없는 50만원 이하의 잔액
 2. 집행계획 또는 집행실적이 없는 출연액 기준 5% 이하의 잔액
 3. 지정발전기금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동일한 목적으로 재유치되지 않아 금액의 변동이 없는 잔액

제8조(기금관리운용계획) 위원회 위원장은 기금관리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제반경비)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기부 유치 공헌자 인센티브는 교비로 충당하며 대학지원본부는 매년도 일정액의 제반경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제10조(기부 유치 공헌자 인센티브) 학교는 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기금조성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하여 조성실적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격려금, 인사고과 반영)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정한다.

1. 대상 : 본교 교직원 <신설 2019.9.19.>
2. 지급액 : 총액 100만원 이상(1년간)이며, 발전기금 총액에 따라 지급 <개정 2020.5.18.>

구분	기부(유치금액)	인센티브 지급액
일반기부금(비지정)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4%
	1,000만원 이상	3%
특정목적기부금(지정)	300만원 이상	3%

3. 기금이 현물일 경우에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인센티브를 정한다. <신설 2019.9.19.>
4. 기부 유치 공헌자가 인센티브 지급액을 교내 특정 대학기관으로 예산 배정을 요구할 경우, 유치 공헌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배정한다. <신설 2022.5.9.>

제11조(회계처리) ①모든 기금은 본교 회계에 편입시키되 독립된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기부자에 대하여 세무처리 등에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2018.8.29., 2022.2.24.>

제12조(기금관리운용의 감독 등) ①기금 및 수익금의 관리운용사용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에 관한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2018.8.29., 2022.2.24.>

제4장 기부자에 대한 예우

제13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등) ①총장은 기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감사장 또는 감사패의 수여
 2. 기부자 감사선물(기부금의 최대 1% 이내의 현물) <신설 2022.5.9.>
 3. 본교 주요 행사에의 초청
 4. 기부자의 이름 또는 아호를 새긴 기념물의 설치
 5. 기타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예우 등
- ②위원회는 제1항의 세부사항 이외의 예우를 기부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학교가 제공할 수 있는 예우내용

- 을 제안서로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 ③기부의 내용과 정도에 따른 예우 내용 및 기부자의 기금 규모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예우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2018.8.29., 2022.2.24.>

제5장 주관부서

- 제14조(주관부서)** ①기금의 관리운영,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은 대외협력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6.4.12., 2018.8.29., 2022.2.24., 2024.3.4.>
- ②기금유치 주관부서 이원화에 따른 조정 및 통합은 기획처가 담당한다. <신설 2022.2.24.>
- ③기획처와 대외협력팀은 정보공유, 협력·연계를 통해 기금 관련 업무를 서로 협조하여 추진한다. <신설 2022.2.24.>

제6장 보 칙

- 제15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